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0 발의연월일: 2020. 8. 25.

발 의 자:이태규·성일종·이 영

박대수 · 최연숙 · 태영호

유경준 • 지성호 • 이명수

김영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소기업 등의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등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 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 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 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 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면제)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
	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업무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
	<u>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
	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
	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
	책을 주장할 수 없다.